

#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

[병원 · 지자체용]

'26.1.

## < 목 차 >

1. 추진배경 및 근거 .....	1
2. 지원대상 및 기관 .....	3
3. 퇴원환자 연계 및 지원 절차 .....	7
4. 퇴원환자 지원 주요 서비스 .....	12
5. 퇴원환자 연계 인센티브(연계수당·수가) .....	14
6. 퇴원환자 연계 주요 서식 .....	15
7. 퇴원환자 연계 및 지원 관련 FAQ .....	30
8. 퇴원환자 연계 및 지원 관련 참고자료 .....	35

# 1

## 추진배경 및 근거

### 가. 추진배경

- 고령화·만성질환 및 1인·취약가구(고령 노인 또는 장애인) 증가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돌봄 및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
- 지자체와 병원이 협력하여 '퇴원환자'를 지역 통합돌봄체계로 신속하게 연결,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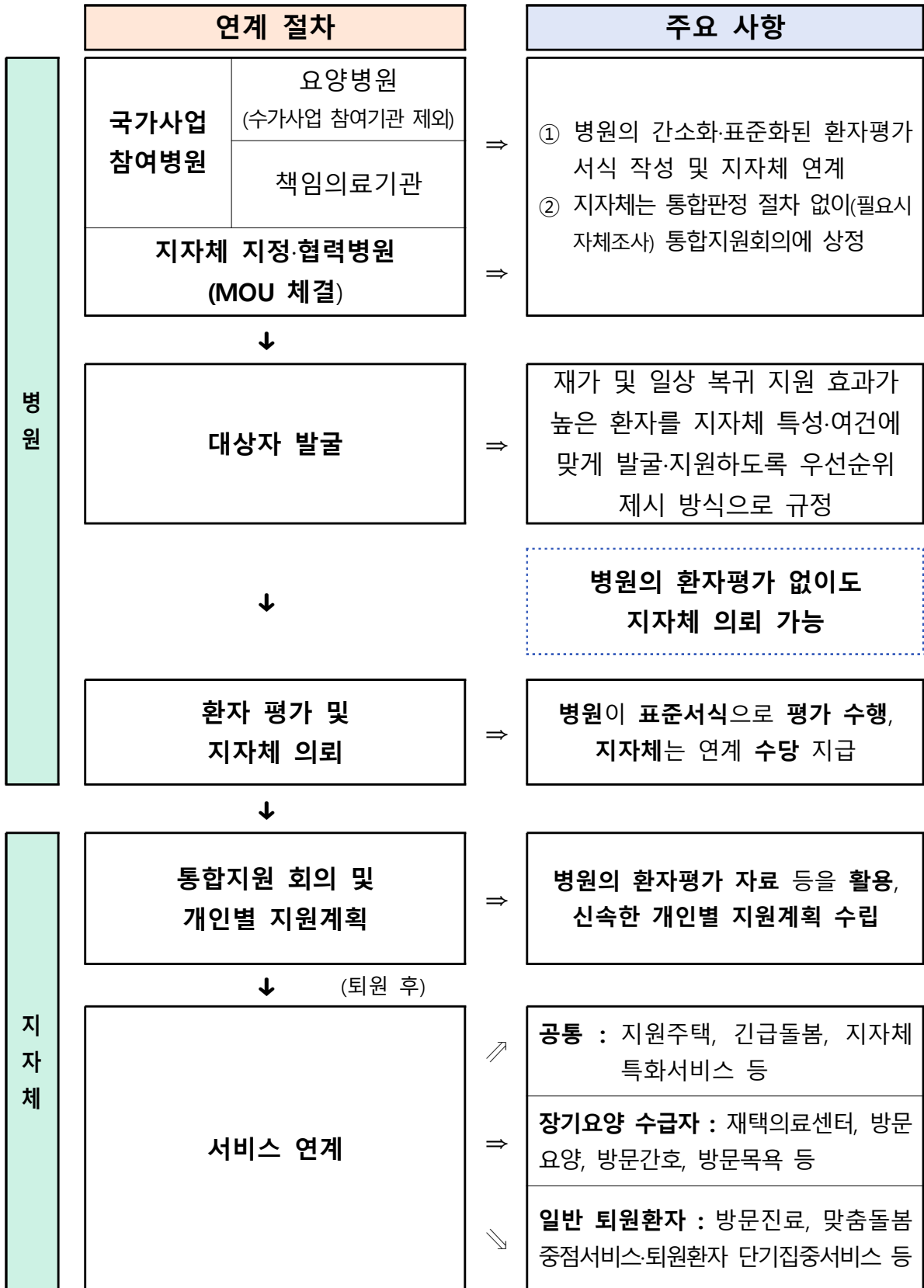
### 나. 법적 근거

- 「돌봄통합지원법」 제11조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퇴원환자에 대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 주요 개념 및 용어 정의 >

- ✓ **퇴원환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예정)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 ✓ **환자 평가** : 환자의 퇴원 이후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다면적 상태와 욕구를 표준화 양식에 따라 조사·기록하는 과정
- ✓ **시·군·구 전담조직** :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 따른 지자체 통합돌봄 실행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종합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최종 확정
- ✓ **통합지원회의** : 지역 내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대상자 종결 여부 등 논의 (시·군·구 전담조직에서 구성·운영 관리)
- ✓ **개인별지원계획** : 환자평가 결과 파악된 대상자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수립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돌봄통합지원법」 제13조)
- ✓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 : 4종,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 <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매뉴얼 주요 사항 >



## 2

## 지원대상 및 기관

### 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의료·돌봄 필요도 고려

- 1) 골절, 낙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 따라 입원치료 후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 2) 암, 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퇴원 이후 지속적인 의료·돌봄 연계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 3)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 및 개인의 의료·돌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 의료·돌봄 필요도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에, 필요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연계할 수 있음
    - a.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재산이 낮은 자
    - b. 독거 노인 등 가족·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자

※ 위 요건은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예시 기준이며, 지자체는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나. 지원대상 선정 방법

- 1) 지자체는 병원과 협약을 체결할 때, 위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 및 인력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자 기준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음
  - 협의 결과는 병원의 대상자 선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
- 2) 병원 내 담당자는 퇴원 예정환자에 대해 연령·장애 여부, 돌봄 욕구 등 간단한 선별평가\*를 실시하여, 통합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를 우선 선별함

- \* (선별평가) 6개 항목 조사(독립생활 가능성, 연령/장애, 퇴원장소, 보호자 돌봄능력, 긴급돌봄 필요성 등) → 선별평가표(서식1)
- \* 선별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별 방법은 본 지침 15p 참고

## 다. 대상기관

### 1) 병원과 지자체 간 퇴원환자 지원 협력체계 마련

-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병원 (요양병원·책임 의료기관 중 참여희망기관, 관외 종합병원 등 포함) 중에 협력병원 선정
  - \* 예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환자지원팀을 갖춘 종합병원급 병원
- 관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시군구의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관외 환자를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관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시·도는 퇴원환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관내 종합 병원급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일괄 협약(MOU) 체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와 협력병원은 퇴원환자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역할 분담 및 협업 (\* 관련 사항 MOU체결 권고)
- ### 2) 협력병원은 퇴원환자 평가·연계를 위해 퇴원지원 담당자를 두고, 대상자 동의 하에 통합돌봄 신청서 및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 시·군·구 전담조직으로 연계
- \* 표준서식: 통합지원 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환자평가표(서식4)
- ### 3)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협력병원에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 연락망\* 제공, 관외 환자도 원활히 연계되도록 병원·지자체 교육
- \* 보건복지부·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홈페이지 게시 및 지침·리플렛 등 활용

## 라.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과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 간 관계

-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연계활동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시범사업, 공공보건의로 협력체계 구축사업

### 1) 기본 원칙

-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수가사업이 아닌 공공보건의로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예외
-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으로 포섭되지 않는 환자 및 의료기관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로 운영
-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국가사업 수가 기준을 활용하고, 비참여 의료기관은 지자체 연계수당을 활용하여, 각각 퇴원환자의 지자체로의 연계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분담함

### 2) 사업 유형별 참여 구조

- 급성기 및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연계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수가 제도'를 통한 참여를 원칙으로 함
  -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 대상 기관은 복지부 홈페이지 및 심평원 게시물 참고
- 요양병원은 환자지원팀 운영을 통해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제도'를 통해 퇴원환자를 연계\*해야 하며, 환자지원팀이 없어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 발굴·평가·연계에 대한 연계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참여병원은 환자지원팀을 설치·신고하고 필수 인력을 1인 이상 신고한 요양병원으로 하며, 해당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청구 가능(해당 요양병원 확인방법은 FAQ에 Q13번 참고)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참여병원 834개소, '26.1.8. 기준)

- 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은 통합돌봄 연계에 활용되는 표준화된 선별평가와 환자평가를 도입하고,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에 협력해야 함 (연계 수당 지급 대상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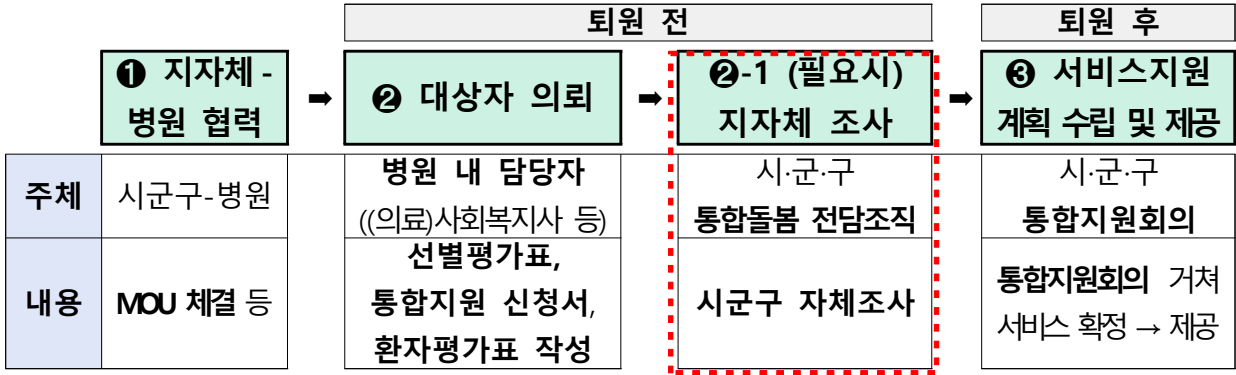
※ 시군구는 책임의료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규모를 설정하되, 기존 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연간 연계 건수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

### 3) 국가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시군구의 역할

-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각각의 사업 기준에 따른 평가서식 및 퇴원계획(수가 청구) 등을 통해 지자체 연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관외 거주 환자에 대해서도 거주지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연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자체는 협력병원뿐 아니라 국가사업 참여병원이 연계한 대상 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연계에 응할 책무가 있음
  - ※ 향후 통합돌봄 퇴원환자 시스템 구축 및 퇴원환자 연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자체-협력병원 사업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음

### 3

## 퇴원환자 연계 및 지원 절차



### 가. (병원 내 담당자) 시·군·구 전담조직으로 대상자 의뢰

- 병원 담당자는 선별평가표, 통합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환자평가표 작성하여 시·군·구 전담조직에 제출

\* 책임의료기관은 통합돌봄 연계시 환자평가표(서식4)를 활용하도록 권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 사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병원 담당자는 퇴원 예정 환자의 건강상태, 일상생활기능, 돌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별평가표·환자평가표 등 표준서식 활용)
- 평가에 앞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통합돌봄 연계 절차 및 지원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반드시 징구
- 통합지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통합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 평가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시·군·구 전담조직에 제출

\* 병원 담당자는 통합지원신청서(서식2)에 병원 담당자 정보 기재

▶ **환자평가표 작성**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하기 어렵거나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협약된 경우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서 실시할 수 있음** (병원은 통합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작성후 바로 시군구에 연계)

- 서류 제출 시엔 연계 시스템이 정식 구축되기 전까지는 이메일, 공문 또는 서류 스캔 후 PDF 파일로 수기 제출하는 방식 우선 활용

\* 제출 서류 및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나. (시·군·구 전담조직) 협력병원으로부터 퇴원환자 의뢰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접수한 이후, 신속한 통합지원회의 상정

▶ 시군구는 협력병원에 시군구 담당자(이메일 및 연락처), 서류 접수 절차, 제출 방식 및 시점, 파일 형식 등에 대해 별도 안내해야 함

- 접수된 구비서류의 내용 및 표준양식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누락 문서, 착오 기재 등 발견시 즉시 병원 담당자에게 보완 요청
- 병원의 환자평가표 등의 서류가 완비된 경우, 지자체의 현장방문 (병원 또는 자택)을 통한 자체조사는 생략 가능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지자체 자체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전담인력이 신속한 자체조사 실시
- 병원제출 서류 및 자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초안 작성

다. (시·군·구 전담조직) 시군구는 병원 제공정보 등을 활용, 통합 지원회의를 통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제공

\* 공통주거·긴급돌봄,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방문간호·요양, 일반방문진료·맞춤돌봄 등 지원

- 확정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해 환자·보호자 및 서비스 기관 등에 공식 안내하고 서비스 신속 개시
- 긴급한 경우 통합지원회의 승인 전 서비스 제공 후 추후 진행 가능(사후승인)

▶ (지역 인프라 연계) 책임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등이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하여 서비스 매칭 및 대상자 사후관리 협업 확대 등 추진 권고

\* (사례)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안성시와 월 2회 정기 협력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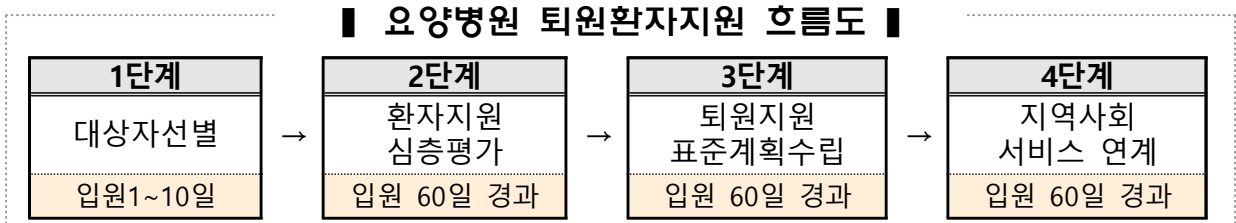
- 통합지원회의 운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제공 및 모니터링 등의 절차는 통합돌봄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수행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 본 지침 본문에 따른 표준화된 서식·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구는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유연하게 퇴원환자 연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참고: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절차와 연계한 퇴원환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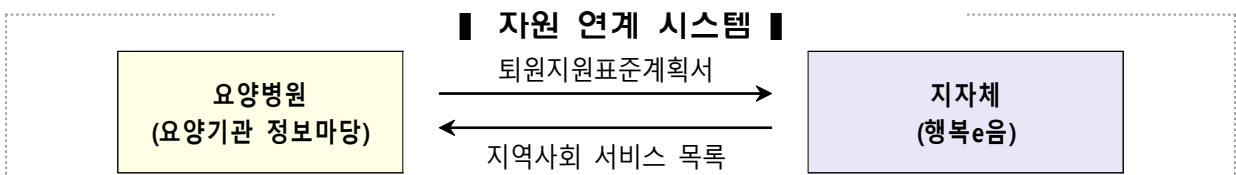
### 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개요



- (대상자 선별) 의료 외 사회·경제적 욕구가 있는 입원환자 선별
- (심층평가) 환자의 기본 정보, 경제·심리·사회적 욕구 등 파악
- (퇴원지원 계획)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자원연계) 환자 실거주지 지역의 지역자원 탐색 및 연계 지원

### 나.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자체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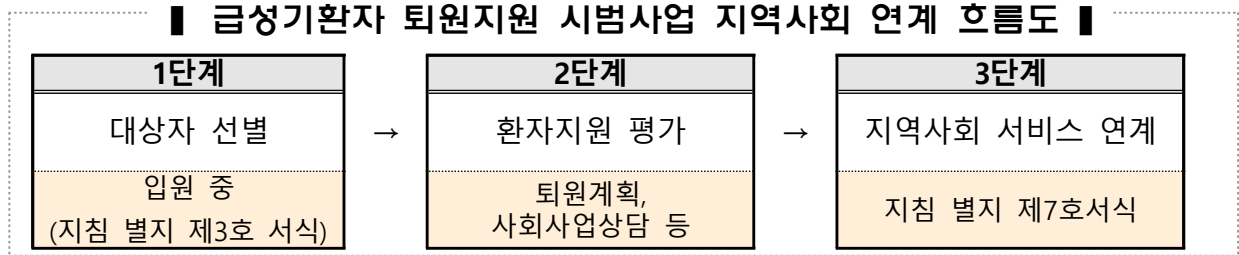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퇴원 후 통합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퇴원 지원 표준계획서를 수립 후 지자체(행복e음)에 의뢰 (수가청구 대상으로 지자체 연계수당 지급 대상 아님)
  - (시군구 전담조직)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지원 회의에 상정 (필요시 자체조사) → 서비스 연계·제공
- \* 요양병원 퇴원환자 연계활성화를 위해 시군구는 통합지원회의 이후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요양병원에 회신할 필요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시스템(행복e음) 전국 229개 지자체 연계 완료('25.12.31.)

## ※ 참고: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 가.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역사회 연계



- (대상자 선별) 급성기 병원 입원 중 선별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 선별
- (통합평가) 선별평가 결과 퇴원 이후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 및 평가 후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정보 수집, 연계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지원연계)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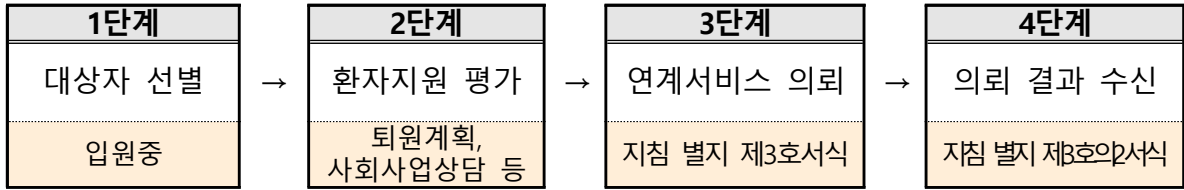
### 나.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연계 활동

- (급성기 환자지원팀) 급성기 기관 환자지원팀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연계를 위하여 '지역사회연계관리표 I' 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의뢰 (지침 25p 참고)
  - (시군구 전담조직) 급성기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 연계
-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해 급성기 병원에 회신하는 절차 없음

## ※ 참고: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연계 과정

#### ■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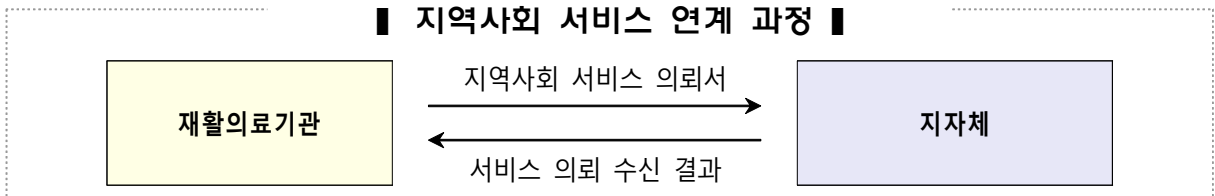


- (대상자 선별 및 평가) 재활의료기관 입원 중 퇴원계획, 사회사업 상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
- (지역사회 자원연계)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의뢰 및 결과 회신

### 나.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 연계 활동

-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연계를 위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의뢰 (지침 27p 참고)
- (시군구 전담조직) 재활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 연계
  - \* 시군구는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 목록을 재활의료기관으로 회신 필요 (지침 29p 참고)
  - ※ 회신 방법은 재활의료기관-시군구 간 협의하되 메일·공문 등 활용 권고

####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과정 ■



- ※ 지자체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의뢰하고 결과를 수신받은 경우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기관 내 활동' 수가 산정

## 4

# 퇴원환자 지원 주요 서비스 (예시)

가. 현황 :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및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 중심 제공\*

\*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보건의료 31.2%, 일상생활지원 28.1%, 주거지원 9.8%)

## 나. 주요 서비스

### 1) 공통 서비스

- (주거) ①문턱 제거·안전보조기구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②퇴원 이후 재가 복귀 위한 주거 지원서비스(지원주택, 중간집 등) 제공
- \* 가칭중간집(단기회복형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업무 처리
- (긴급돌봄)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공적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퇴원환자에 대해 돌봄 및 방문목욕 등 제공
- (자활센터·복지관 프로그램)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자활센터 활용, 복지관 연계 식사지원·체육프로그램 등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 강화
- (일상생활돌봄 지역특화돌봄\*) 지역의 가사·식사·이동 등 지자체 특화 서비스를 지원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참고

### 2) 장기요양 인정자

- (보건의료 재택의료센터) 다학제 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이 방문진료, 간호,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퇴원 이후 건강 관리
- (보건의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감염·통증관리, 투약지도, 구강 관리, 보호자 교육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간호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돌봄 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가 거동불편 퇴원환자의 신체 활동(세면, 식사보조), 일상생활(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목욕 등 지원

### 3) 일반 퇴원환자 (非장기요양수급자)

- (보건의료방문진료)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재가(가정)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돌봄노인맞춤돌봄) 퇴원 노인에게 중점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개월 범위 내 집중서비스 패키지 구성·제공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및 연계방안 》

#####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① (중점 서비스, 4.5만명)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안부, 사회참여, 생활교육, 가사·이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월 20~40시간)
- ②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1만명) 급성기병원 및 요양병원 등 퇴원노인에게 1개월 범위 내 집중서비스 패키지(영양+가사+이동지원)를 구성하여 제공(월 최대 44시간)

##### ▶ (연계방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 개정 예정('26.1.1~)

- 통합돌봄 개인별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또는 '퇴원환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의뢰된 경우

→ 노인맞춤돌봄 신청 담당공무원(읍면동)이 직권으로 신청한 후, 별도 선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계획만 수립하여 시군구 승인을 받아 수행

\* 현재는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조사 수행 중

### 가. 퇴원환자 연계 인센티브 설계 원칙

-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환자평가표 등 지자체 연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지자체에 의뢰한 경우 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는 ①건강보험에 따른 수가(국가사업 참여병원) 또는 ②지자체 자체 연계수당(지자체 별도 협력병원) 지급
- 지자체 연계수당의 범위는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병원이 환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지원신청서 등 제한된 서류로 연계한 경우에도 일부 자체 보상 가능

### 나. 인센티브 모델별 구분

#### 1) 국가사업 참여병원(급성기·재활의료기관·요양병원 등)의 경우

- 사업별 지침 및 수가 산정기준(평가·연계 등)에 따라 병원은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수가 청구 가능

#### 2) 지자체 협력병원의 경우

- 표준서식 구비 또는 협약 내용 충족시 병원에 연계수당 지급 가능
- 연계실적에 따라 건당 2.5~5만원 지급, 지자체 예산 등 활용

#### 3) 단순 의뢰인 경우

- 제공 정보가 미흡하거나, 평가서식 등 필수서류 미비하여 별도의 지자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 미지급 권고
- 단, 퇴원환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제한된 정보 제공에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약\*한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예: 선별평가 결과, 통합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및 지자체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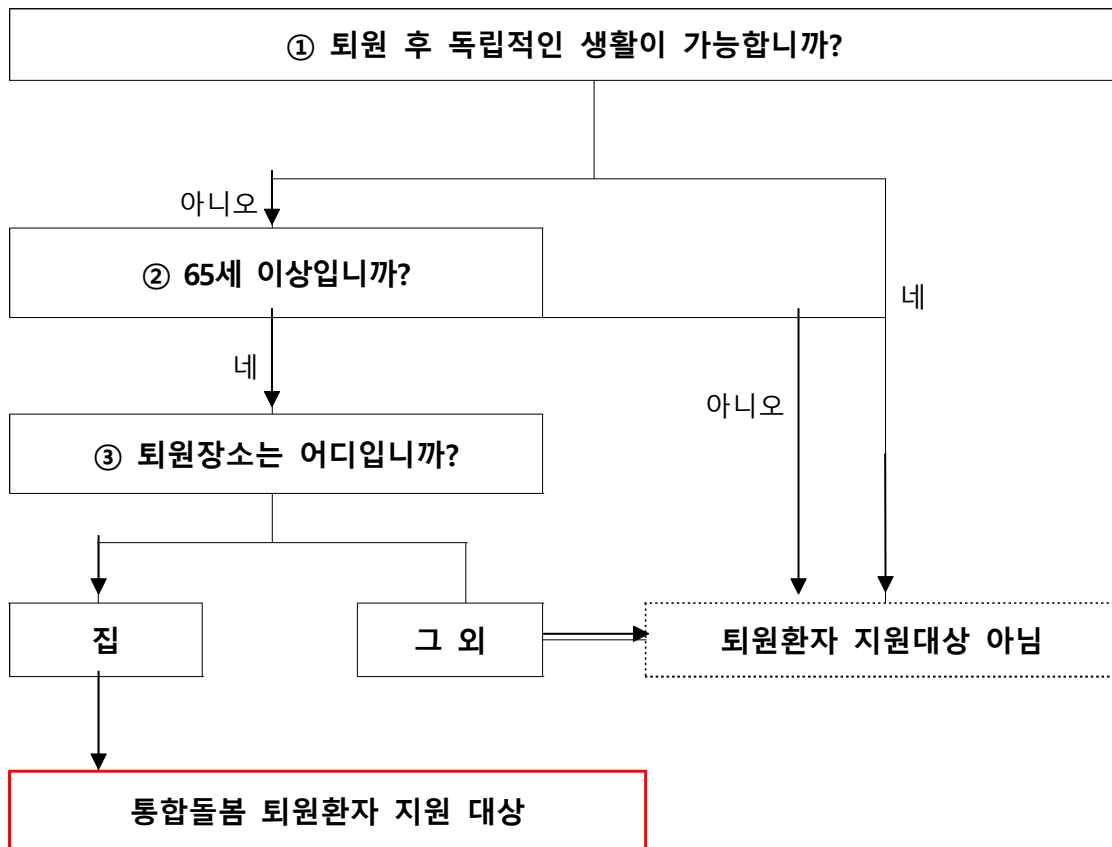
## 6

## 퇴원환자 연계 주요 서식

### □ 서식 1: 선별평가표

질문(6개 항목)	답변
①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65세 이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예상되는 퇴원장소는 어디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집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지역사회 거주지원시설 포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④ 혼자 사시거나, 퇴원 이후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⑤ 의료급여 수급자입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⑥ 퇴원 후에 긴급돌봄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참고1 : 선별평가 해석 방법



※ 질문 4~6번은 지자체가 필요시,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병원에서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정보에 해당

□ 참고2 : 퇴원 후 독립적 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 mRS(modified Rankin Scale) 활용 가능, mRS 지표가 2점에서 5점 사이로 판정되는 경우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mRS 점수	판단 지표
0점	증상 없음
1점	경미한 증상, 독립적인 활동 가능
2점	경미한 증상, 독립적인 활동 가능, 하지만 약간의 도움 필요
3점	중등도 장애, 도움 필요
4점	중증 장애, 도움 없이 일상생활 불가
5점	중증 장애, 누워서 생활, 요양원 등 도움 필요
6점	사망

## □ 서식 2: 통합지원신청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통합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대상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주소와 다른 경우만 작성)		

※ 친족·후견인란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친족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족 · 후견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배우자 [ ]부모 [ ]자녀 [ ]그 외의 친족 [ ]후견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 업무담당자란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업무 담당자	기관명	
	기관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안내방법	안내대상	[ ] 대상자 본인 [ ]친족·후견인
	안내방식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 보호자란은 대상자(본인)를 돌보는 보호자(실제 연락 가능한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 ] 담당공무원(직권), [ ]본인, [ ]친족·후견인, [ ] 업무담당자(는)) 위와 같이 통합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담당공무원(직권)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쪽 중 제3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상자	성명	성별	[ ] 남성 [ ] 여성	신청일자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주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연구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법에 따른 제반(위탁) 업무 수행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결 후 5년

-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계획 수립 및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요

### ■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업무위탁 기관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법에 따른 조사·발굴·판정에 관한 업무, 퇴원·퇴소시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하기 위한 업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한 업무,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업무
제3자가 제공받는 민감정보의 항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의학적 정보(상병, 질환 등), 기능평가 정보, 사회경제적 상태, 지역연계 결과, 서비스 계획 및 사후관리 관련 내용 등
제3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결 후 5년

-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수집됩니다.
-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계획 수립 및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요

■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업무위탁 기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목적	법에 따른 조사·발굴·판정에 관한 업무, 퇴원·퇴소시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하기 위한 업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한 업무,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목적의 업무
제3자가 제공받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
제3자의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결 후 5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관련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수집됩니다.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요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4: 환자평가표(지자체 자체조사 서식과 동일)

<b>환자평가표</b>							
<b>■ 대상자 기본사항</b>							
성명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type="radio"/> 여	연령	만 세	생년월일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택:			핸드폰:			
	비상연락처 : (관계: )						
주수발자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input type="radio"/> 손자녀 <input type="radio"/> 친인척 <input type="radio"/> 친구·이웃 <input type="radio"/> 사적 간병인 <input type="radio"/> 공적서비스 돌봄제공자(요양보호사 등)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자원봉사자 <input type="radio"/> 기타 ( )						
가구형태	<input type="radio"/> 독거 <input type="radio"/> 비독거(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노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조손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input type="checkbox"/> 친척·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회보장수급권	<input type="radi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보훈) <input type="radio"/> 기초연금 <input type="radio"/> 일반가구						
대상자 유형	장기요양 재급여자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input type="checkbox"/> 3등급 <input type="checkbox"/> 4등급 <input type="checkbox"/> 5등급 <input type="checkbox"/> 인지등급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등급외(A, B) <input type="checkbox"/> 기간·각하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일반돌봄군 <input type="checkbox"/> 중점돌봄군) <input type="checkbox"/> 퇴원(예정)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발굴) 장애등록/정도(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치매안심센터 [ 급식 및 도시락 반찬 [ 활동보조 [ ]말벗 [ ]보건소 사업 [ ]주거개선사업 [ ]건강운동교실 [ ]목욕·이미용 [ ]이동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 ]무료진료연계 [ ]가사간병방문도움 [ ]여가, 문화, 교육 [ ]기타( )						
<b>■ 주거환경상태 (※ 현장조사 시 조사자가 확인 / 병원조사인 경우 생략 가능)</b>							
생활방식	<input type="radio"/> 단독보행 <input type="checkbox"/> 클러치사용 <input type="checkbox"/> 좌식생활 <input type="checkbox"/> 휠체어사용 <input type="radio"/> 외상생활						
주거상태	<input type="radio"/> 노후 <input type="radio"/> 보통 <input type="radio"/> 양호	인터넷가능여부 (스마트폰 포함)		<input type="radio"/> 가능 <input type="radio"/> 불가능			
주택형태	<input type="radio"/> 단독주택 <input type="radio"/> 아파트 <input type="radio"/> 연립주택 <input type="radio"/> 다가구주택 <input type="radio"/> 비주택 <input type="radio"/> 기타( )						
주거지상태	<input type="radio"/> 지하 <input type="radio"/> 1층 <input type="radio"/> 2층이상 (계단 <input type="checkbox"/> / 승강기 <input type="checkbox"/>						
난방형태	<input type="radio"/> 가스보일러 <input type="radio"/> 연탄보일러 <input type="radio"/> 기름보일러 <input type="radio"/> 아궁이 (연탄 / 장작) <input type="radio"/> 난방없음 <input type="radio"/> 기타( )						
화장실형태	<input type="radio"/> 공용 <input type="radio"/> 전용		<input type="radio"/> 수세식 <input type="radio"/> 재래식				
주요 주거환경	조명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문턱여부(현관, 방, 화장실)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계단(계단난간위치)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집안의 안전손잡이	<input type="radio"/> 양호 <input type="radio"/> 불량		
<b>■ 일상생활기능</b>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옷 입기 (옷 꺼내기, 단추· 지퍼·벨트 채우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대소변 조절하기			
차려 놓은 음식먹기							

■ 도구적 일상생활기능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몸단장 (빗질, 화장, 면도 등)				금전 관리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집안일 (실내청소, 집안정돈 등)				근거리 외출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서)					
식사준비 (음식재료준비, 요리 등)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빨래 (세탁후 널어말리기 포함)				전화 걸고 받기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개인 차)					
■ 식사기능									
1) 하루에 몇 끼니를 챙겨드립니다?(간식 제외)				① 1끼      ② 2끼      ③ 3끼					
2) 음식 씹는 기능				① 씹기 어렵다      ② 부드러운 음식을 잘 씹는다 ③ 어떤 음식이든지 잘 씹는다					
3) 음식을 삼키는 기능 (연하곤란, 사레들림 등)				① 삼키기 어렵다      ② 부드러운 음식을 잘 삼킨다 ③ 어떤 음식이든지 잘 삼킨다					
■ 인지심리기능									
1) 단기 기억력				① 정상      ② 이상 있음      ③ 확인 불가					
2) 일상생활 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 기술				① 스스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 ②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③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④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3) 우울정도									
(1)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일이나 취미 혹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대부분 흥미를 잃어 버린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병의원 이용									
1)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최근 1년)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았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3번으로 이동)					
2-1)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가동이 불편해서    ③ 의료정보 부족    ④ 병원 예약이 어려워서    ⑤ 증상이 가벼워서    ⑥ 기타(      )									
3) 다른 사람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기다리 통증 및 불편 사항				①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매우 심함					
5) 병명 및 복용 중인 약(지자체 조사인 경우 생략 가능)				병명:		복용약:			
■ 이동지원									
1)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실외 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기존 이동지원서비스 수혜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서비스 유형별 필요여부 (조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		타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주요욕구									
일상생활기능		인지심리기능		의료적욕구		주거환경			
[종합의견]									
※ 지자체 자체조사를 수행한 담당자가 대상자(보호자)의 현재 생활현황 및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조사결과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내용(조사자 판단)을 종합적으로 기입함									

□ 참고: 병원 및 지자체 표준 MOU 서식

-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의뢰 -

## 업 무 협 약 서

OO(시군구)와 OOO(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환으로 제공되는 퇴원환자 연계의뢰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 복귀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퇴원환자의 통합돌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연계 의뢰를 통해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적극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분야별 서비스 제공, 관리, 계획,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서로 공유한다.
3. 양 기관은 통합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기타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개인의 건강 정보를 양 기관 간 사전 합의 없이 타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지속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르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제6조(기타사항)** 양 기관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로고)

(로고)

○○ 병원 이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서명)



□ 참고 서식2 : 급성기 지역사회연계관리표

지역사회연계관리표 I (기관 내 활동)			
<b>A. 일반정보</b>			
1. 요양기관명			
2. 지역사회 연계기관	2.1 형태	<input type="radio"/> 지자체 <input type="radio"/> 보건소 <input type="radio"/>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input type="radio"/> 복지기관 <input type="radio"/> 기타 (____)	
	2.2 기관명		
	2.3 지역 구분		
3. 기본사항	3.1 환자성명		
	3.2 생년월일		
	3.3 성별	<input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여자	
	3.4 장애등록	<input type="radio"/> 해당 없음 <input type="radio"/> 유 ( <input type="radio"/> 중증 <input type="radio"/> 경증) <input type="radio"/> 진행 중 <input type="radio"/> 신청예정	
	3.5 장기요양등급	<input type="radio"/> 해당 없음 <input type="radio"/> 신청 ( <input type="radio"/> 신청예정 <input type="radio"/> 진행 중 <input type="radio"/> 신청완료: __ 등급) <input type="radio"/> 기 등급자: __등급 <input type="radio"/> 추후 재의뢰	
	3.6 이동수단	<input type="checkbox"/> 자가용 ( <input type="radio"/> 자가운전 <input type="radio"/> 타인운전)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 <input type="radio"/> 자립이용 <input type="radio"/> 도움필요) <input type="checkbox"/> 도보 <input type="checkbox"/> 구급차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 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	
	3.7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수급권자 ( <input type="checkbox"/> 1종 <input type="checkbox"/> 2종)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자활급여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4. 가구 및 돌봄	4.1 돌봄 제공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관계: _____) <input type="checkbox"/> 유급 간병인 <input type="checkbox"/> 요양보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계: _____)	
	4.2 가구형태	<input type="radio"/> 1인 가구 <input type="radio"/> 부부가구 <input type="radio"/> 자녀동거 <input type="radio"/> 기타 (____)	
5. 주거환경 개선 항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안전 관리 ( <input type="checkbox"/> 문턱 <input type="checkbox"/> 미끄럼방지 <input type="checkbox"/> 손잡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 <input type="checkbox"/> 이동 ( <input type="checkbox"/> 계단 <input type="checkbox"/> 문턱 <input type="checkbox"/> 안전 바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부엌 <input type="checkbox"/> 거실 <input type="checkbox"/> 침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	
<b>B. 건강정보</b>			
1. 진단명		2. 발병일자	
3. 인지검사 결과(MMSE) (선택)		(____)/ 30점	
4. 동반질환		<input type="radio"/>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	

5. 통증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있음 (부위: _____ <input type="radio"/> 간헐적 <input type="radio"/> 지속적)
6. 욕창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있음 (부위: _____ 단계: _____)
7. 보행능력	<input type="radio"/> 완전자립 <input type="radio"/> 도움필요 <input type="radio"/> 걷지 못함
8. 보조기구	<input type="radio"/> 도보 <input type="radio"/> 지팡이 <input type="radio"/> 보행기 <input type="radio"/> 휠체어 <input type="radio"/> 기타 (_____)
9. 화장실 사용	<input type="radio"/> 화장실 사용 ( <input type="radio"/> 완전독립 <input type="radio"/> 도움필요) <input type="radio"/> 기저귀 사용 <input type="radio"/> 이동식변기 사용 <input type="radio"/> 기타 (_____)
10. 식사 기능	<input type="radio"/> 완전독립 <input type="radio"/> 도움필요 <input type="radio"/> 행위 발생 안함
11. 연하장애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있음

**C. 환자·보호자 요구사항**

1. 환자 요구사항		
2. 보호자 요구사항		
3. 희망 서비스 ※ 중복선택 가능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직업상담 및 알선 <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input type="checkbox"/> 창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자활 및 일자리사업 <input type="checkbox"/> 직업유지 및 자립지원 <input type="checkbox"/> 구직관련 비용지원
	주거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관련 비용지원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가사지원 <input type="checkbox"/> 식사(식품)지원 <input type="checkbox"/> 활동(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생활용품 지원 <input type="checkbox"/> 위생(이미용)지원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 <input type="checkbox"/> 복합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검진, 진단 및 치료 <input type="checkbox"/> 재활치료 <input type="checkbox"/>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의약품, 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교육 <input type="checkbox"/> 심리검사 및 진단 <input type="checkbox"/>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신,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관련 비용지원
	보호 및 돌봄, 영양	<input type="checkbox"/> 장기 시설보호 <input type="checkbox"/> 단기 시설보호 <input type="checkbox"/> 주야간 보호 <input type="checkbox"/> 간병 및 돌봄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돌봄, 영양관련 비용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안전 및 인권교육 <input type="checkbox"/> 학대 및 폭력피해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재무상담 <input type="checkbox"/> 법률지원관련 비용지원

**D. 기타 사항**

추가 제공 서류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기능평가결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

연계일자:       년       월       일  
연계 담당자: \_\_\_\_\_

□ 참고 서식3 :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의뢰하는 기관					
의뢰받는 기관	형태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케어안내창구 <input type="checkbox"/> 복지기관 <sup>1)</sup> <input type="checkbox"/> 기타 <sup>2)</sup>			
	기관명				
	주소	시(도)	구(군)	동(면) 까지만 기재	
기본사항	성명 /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전화번호	환자	보호자		
	행정 주소지				
	퇴원 후 거주지				
	장애등록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중증 <input type="checkbox"/> 경증 )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신청예정		
	장기요양등급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예정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완료: ___등급) <input type="checkbox"/> 기 등급자: ___등급 <input type="checkbox"/> 추후 재 의뢰		
가구 및 돌봄	돌봄 제공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 <input type="checkbox"/> 유급 간병인 <input type="checkbox"/> 요양보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			
	가구형태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자녀동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건강수준	진단명		발병일	년    월    일	
	만성질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인지(MMSE)	(            ) / 30점			
	통증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부위:            ) <input type="checkbox"/> 간헐적 <input type="checkbox"/> 지속적			
	피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욕창(부위:            단계:            )			
	보행능력	<input type="checkbox"/> 완전자립 <input type="checkbox"/> 도움필요 <input type="checkbox"/> 걷지 못함			
	보조기구	<input type="checkbox"/> 도보 <input type="checkbox"/> 지팡이 <input type="checkbox"/> 보행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화장실 사용하기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 <input type="checkbox"/> 완전독립 <input type="checkbox"/> 도움필요 ) <input type="checkbox"/> 기저귀 <input type="checkbox"/> 이동식변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식사하기	기능	<input type="checkbox"/> 완전독립 <input type="checkbox"/> 도움필요 <input type="checkbox"/> 행위 발생 안함		
		연하장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참고 서식4 :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수신 결과(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수신 결과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수신 일자	년    월    일	
수신 방법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의뢰받는 기관	기관명	
	주소	시(도)                      구(군)                      동(면) 까지만 기재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연계 서비스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	
작성일:    년    월    일 담당자 _____		

**Q1 퇴원환자 연계·지원 대상에 대한 질환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A1

○ 네, 그렇습니다. 퇴원 후 재가 복귀 예정환자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판단되는 자라면 질환 제한 없이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재입원 위험이 높은 질환\*인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65세 이상 노인 중 90일 내 재입원 다빈도 질환은 뇌졸중, 만성콩팥병, 무릎 관절·척추병증, 편마비, 폐렴, 파킨슨병, 골절 등(24년 건강보험 청구실적 분석 결과)

**Q2 국가에서 운영하는 퇴원환자 지원사업(제도)에 참여하는(혹은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자체 자체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 아닙니다.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 병원은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또는 해당사업의 사업비(인건비)로 보상받으며, 동일 활동에 대해 지자체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연계수당은 국가퇴원환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 인센티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Q3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거나 의료기관 규모가 작은 시·군·구도 관외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나요?**

A3

○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거나 관내병원의 퇴원환자 연계 역량이 제한적인 경우, 지자체는 환자 이용이 많은 관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퇴원환자 발굴 및 통합돌봄 연계를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 기준, 연계절차, 정보제공 범위 등을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Q4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시 병원과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A4

- 협력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초기 선별평가 및 환자평가, 통합지원 신청·연계, 환자 및 보호자 안내를 담당합니다.
- 지자체는 병원이 연계한 정보 검토, 통합지원회의 운영,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사후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 퇴원환자 연계 및 지원을 전담하는 지자체 연락 창구는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이 수행하며, 시군구-보건소 협약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부 업무 지원 가능함
- 상기한 대로, 표준화 절차에 따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MOU 등 협약에서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5 연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5

- 협력병원이 표준서식 작성 및 연계절차를 준수하여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환자를 연계한 경우 지자체 연계수당이 지급됩니다.
- 연계수당은 지자체와 병원이 협약한 바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규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원이 국가사업 참여병원으로서 해당 사업이 정한 기준과 평가 서식 등에 따라 지자체에 연계한 경우, 건강보험 수가 지급대상 또는 별도 인건비를 지원받으므로 지자체 연계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Q6 병원에서 평가서 작성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평가 등은 수행하지 않고 대상자 연계·의뢰만 수행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A6

- 실무적으로 평가서 작성이 곤란하거나, 병원 내 담당인력이 부족한 경우, MOU 등의 협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만 제출하면, 추가 평가는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평가 등은 수행하지 않고 대상자 연계·의뢰만 수행하는 경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병원 협약 내용에 따라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Q7 타지역 병원에서 발굴된 환자(관외환자)는 어떤 절차로 연계되나요?**

A7

- 지역 내 병원이 아니라 타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환자에 대해 거주지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해당 병원은 표준서식(평가표·신청서 등)을 환자 거주지 지자체로 전달하여 연계를 요청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은 접수 즉시 퇴원환자에 대한 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때, 연계한 병원이 거주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협력병원인 경우,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연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8 관외환자를 발굴하거나 연계할 때 특별한 협약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A8

- 지자체와 병원 간 MOU 등 공식 협약에 관계없이, 타지역 퇴원환자라도 표준화된 신청 및 연계 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외환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관외 종합병원급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외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등에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연락망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Q9 관외환자 연계시 인센티브나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A9

- 관외환자 연계도 원칙적으로 환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되며, 인센티브는 거주지 지자체가 사전에 협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다만, 거주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 관외환자를 연계한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습니다.  
※ 병원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평가 없이 의뢰만 할 수 있음

Q10

**타지역 거주 환자가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으로 퇴원연계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10

- 담당자인 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퇴원 예정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자체조사를 직접하거나, 협력 병원인 경우, 병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원 후 희망시 직접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1

**퇴원환자 연계 실적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나요?**

A11

- 퇴원환자 연계 실적은 최소한 ①병원으로부터 의뢰·접수된 건수\*(시스템에 자체조사 결과 입력), ②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건수, ③실제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건수, ④일정기간(예: 3·6개월) 이후 모니터링 완료 건수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자평가표(서식4)의 대상자 유형에 퇴원(예정자)의 의료기관 연계에 체크된 건수  
※ 시스템 개통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실적관리 방침
-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실적이 모두 포함되며,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Q12

**보건소도 퇴원환자 연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12

- 퇴원환자 연계 및 지원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이 수행합니다. 다만 시군구 대신 보건소에 통합돌봄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거나, 지자체 내 역할 조정에 따라 보건소가 퇴원환자 연계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건소가 의뢰된 퇴원환자의 접수, 개인별 지원계획 초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13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참여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2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와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건강모아> 검진기관/병원 찾기> 검진기관/병(의)원찾기> '특성별 병원' 선택> '요양병원(퇴원환자지원참여)' 선택> 검색

2) 모바일앱: 건강모아> 검진기관/병(의)원찾기> 병(의)원찾기(탭)> 특성병원(탭) 선택> '요양병원(퇴원환자지원참여)' 선택> 검색

## □ 국가 퇴원환자지원사업 개요

## ①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사업)

- (대상자) 뇌손상· 척수손상· 뇌·척수중복손상 근골격계· 절단· 비사용 중후군 등
- (내용) '환자지원팀' 구성, 퇴원환자의 의료적·경제사회적 요구도 평가,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및 관리
- (대상기관) 185개 의료기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국공립병원·상급종합병원(51개))
- (건강보험 수가) 평가료(통합평가료 I, II, 통합기능평가료)+통합퇴원계획관리료+지역사회연계활동(지역사회연계관리료 I, II)+사후관리(재택관리료,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로 구성  
\*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적용, 일반환자 20%, 산정특례 대상 5~10%

## ②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사업)

- (대상자) 입원일로부터 60일 경과+지역사회 연계 필요한 퇴원 예정자
- (내용) 환자지원 심층평가 → 퇴원지원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연계
- (대상기관) 환자지원팀을 설치·운영하는 요양병원(837개소)
- (건강보험 수가) 지역사회 연계평가료 + 퇴원계획 관리료 + 연계관리료

## ③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사업)

- (대상자) 재활의료기관에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 (내용) 환자 맞춤형 퇴원계획 → 환자 의뢰 및 환자·보호자 교육, 복지관 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 주거환경 평가 등 지원체계 마련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재활의료기관(53개소)
- (건강보험 수가) 통합계획관리료, 퇴원계획, 지역사회연계료 등

## ④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대상자) 다학제팀의 의학적·사회경제적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내용) 환자평가 → 케어플랜 수립 → 지역사회 연계 → 모니터링
- (대상기관)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55개소)
- (예산) 책임의료기관(권역·지역) 사업비로 운영

□ 상급종합병원 목록(47개소)

연번	권역	의료기관명
1	서울 (14)	강북삼성병원
2		건국대학교병원
3		경희대학교병원
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5		삼성서울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
9		이화대학교 이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10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11		중앙대학교병원
12		한양대학교병원
1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14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5	경기 (9)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16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17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18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9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2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2		아주대학교병원
23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4	강원 (2)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25		강릉아산병원
26	충청 (4)	충북대학교병원
27		충남대학교병원
28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29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번	권역	의료기관명
30	경상 (13)	경북대학교병원
3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32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33		영남대학교병원
3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35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36		동아대학교병원
37		부산대학교병원
38		양산부산대학교병원
39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4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4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2		학교법인 영산학원 해운대부산성심병원
43	전라 (5)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44		조선대학교병원
45		전남대학교병원
46		전북대학교병원
47		원광대학교병원

□ 재활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53개소)

연번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1	서울 (7)	강북구	국립재활원
2		종로구	로이병원
3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4		송파구	송파드림재활병원
5		영등포구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6		광진구	제니스병원
7		강남구	청담병원
8	부산 (6)	서구	동아대학교대신병원
9		연제구	워크재활의학과병원
10		사상구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11		북구	재단법인 일신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재활병원
12		남구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13		해운대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14	대구 (5)	북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15		중구	남산병원
16		북구	대구보건대학교병원
17		달서구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18		수성구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19	인천 (3)	남동구	미추홀병원
20		남동구	브래덤재활병원
21		계양구	서송병원
22	광주 (3)	광산구	광주365재활병원
23		북구	우암병원
24		북구	호남권역재활병원
25	대전 (4)	서구	다빈치병원
26		유성구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연번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27	대전 (4)	유성구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28		유성구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재활병원
29	경기 (11)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30		의정부시	로체스터병원
31		용인시	린병원
32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33		성남시	분당리스크재활병원
34		성남시	분당베스트병원
35		광주시	에스알씨(SRC)재활병원
36		구리시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37		고양시	일산복음재활병원
38		고양시	일산중심재활병원
39		부천시	휴앤유병원
40	강원(1)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41	충북 (4)	청주시	씨엔씨푸른병원
42		청주시	아이엠재활병원
43		청주시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재활병원
44		청주시	첼로병원
45	충남 (2)	천안시	SG삼성조은병원
46		천안시	천안재활병원
47	전북(1)	전주시	드림솔병원
48	경북 (2)	구미시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재활병원
49		안동시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북주회복병원
50	경남 (3)	진주시	예손재활의학과병원
51		김해시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52		창원시	희연재활병원
53	제주(1)	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

□ 책임의료기관 목록(권역 17개소, 지역 55개소)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서북	서울적십자병원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원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서울동북	서울의료원			성남권	성남시의료원		
		서울서남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의정부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서울동남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안양권	한림대성심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서부				부천권	부천세종병원		
		부산중부	부산광역시의료원			평택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산동부				안산권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동북				고양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구서남	대구의료원			남양주권			
인천	가천대길병원	인천서북	나은병원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인천동북	인천세종병원			이천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인천중부	인천광역시 의료원			포천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인천남부	인천적십자병원			전주권	예수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서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군산시	군산의료원
		광주동남	광주기독병원					익산시	원광대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서남	동강병원					정읍권	정읍아산병원
		울산동북	울산병원	남원권	남원의료원				
세종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세종		목포권	목포시의료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서부		전남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여수시			
		대전동부				순천권	순천의료원		
충남	단국대병원	천안권	천안의료원			해남권			
		공주권	공주의료원			영광권			
		서산권	서산의료원	포항권	포항의료원				
		논산권	백제병원	경주권	동국대경주병원				
		홍성권	홍성의료원	안동권	안동의료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청주권	청주의료원	구미권	김천의료원				
		충주권	충주의료원	영주권	영주적십자병원				
		제천권	명지병원	상주권	상주적십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춘천권		창원권	마산의료원				
		원주권	원주의료원	진주권					
		영월권	영월의료원	통영권	통영적십자병원				
		강릉시	강릉의료원	김해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동해권	삼척의료원	거창권	거창적십자병원				
		속초권	속초의료원	제주시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